부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2년 11월 22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2년 11월 2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01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2002년11월13일) 상정
- 제101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2002년11월13일)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 개정이유

○ 의료보호법(2001. 5. 24) 및 의료보호법시행령(2001. 9. 29)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용어를 조정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조례의 제명을 부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에서 부천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로 조정함.

○ 특별회계의 의료보호기금을 의료급여기금으로 하고 보호대상자를 수급권자로 하며 의료보호비를 의료급여비로 조정함(안 제2조)

○ 의료급여비 대불금 결손처분 방법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처분을 하던 것을 의료급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분하도록 조정함(안 제7조의 2)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없 음	○ 없 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상위법이 개정될 경우 즉시 조례를 개정하여 시민들께서 혼란을 겪는 등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시기 바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재출년월일 : 2002. 11.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의안번호	제56호
의결연월일	2002.12.24 (제101회)

□ 제안이유

○ 의료보호법(2001. 5. 24) 및 의료보호법시행령(2001. 9. 29)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용어를 조정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조례의 제명을 부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에서 부천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로 조정함

나. 특별회계의 의료보호기금을 의료급여기금으로 하고 보호대상자를 수급권자로 하며 의료보호비를 의료급여비로 조정함(안 제2조)

다. 의료급여비 대불금 결손처분 방법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처분을 하던 것을 의료급여법 제 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분하도록 조정함(안 제 7조의 2)

부천시조례 제 호

부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부천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로 하고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이하 "법"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 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 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 "의료보호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 을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 으로 하고, "보호대상자" 를 "수급권자" 로 하며, "의료보호비" 를 "의료급여비"로 한다.

제3조의 제목 "(회계공무원의 임명)" 을 "(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으로 하고, 동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은 시의 의료급여업무담당국장 기금분임담당관은 시의 의료급여업무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시의 의료급여업무담당주사로 한다

동조제3항중 "분임기금운용관" 을 "분임기금담당관" 으로 "의료보호업무담당과장"은 "의료급여업무담당과장"으로 "의료보호업무담당주사"는 "의료급여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4조의 제목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을 "(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 으로 하고, 동조중 "기금운용관" 을 "기금담당관" 으로 한다.

제5조중 "분임기금운용관" 을 "분임기금담당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분임기금운용관은 보호대상자에게 의료보호"를 "분임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로 하고, "의료보호비" 를 "의료급여비" 로 하며, "의료보호대상자관리카드"를 "의료급여대상자관리카드"로 한다

제7조제1항중 "분임기금운용관" 을 "분임기금담당관" 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의료보호" 를 "의료급여" 로 한다.

제7조의 2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를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하고, 동조 제1호 내지 제6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 제2호서식중 "의료보호기금"을 "의료급여기금"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부천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보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 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2조 (세입과 세출) --------의료급여기금(이하"기금" 이라 한다)---------- 수급권자----의료급여비----------.
제3조 (회계공무원의 임명) ①의료보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시의 의료보호업무담당국장,기금분임운용관은 시의 의료보호업무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시의 의료보호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② (생 략) ③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구 분임기금운용관은 구의 의료보호업무담당과장 분임기금출납원은 구의 의료보호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3조 (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①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은 시의 의료급여업무담당국장,기금분임담당관은 시의 의료급여업무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시의 의료급여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분임기금담당관---의료급여업무담당과장----------의료급여업무담당주사----------.

현 행	개 정 안
제4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 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4조 (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 ----------기금담당관----------.
제5조 (수입) ①분임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분임기금 운용관에게 영수 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 (수입)**분임기금담당관----------. ② (현행과 같음) ③----------분임기금 담당관----------.
제6조 (지출) ①분임기금운용관은 보호대상자에게 의료보호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보호비를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 한 후 의료보호대상자관리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분임기금출납공무원에게 지출원인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6조 (지출)** ①분임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의료급여비----------의료급여대상자관리카드----------.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7조 (대불금의 상환등) ①분임기금운용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불금의 지출원인 행위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기일로 하여 3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1.~3. (생략) ② 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내에 6개월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자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를 정지한다 ③ 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의 정지를 받은후 6월이 지나도록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7조 (대불금의 상환등)** ①분임기금담당관 ---------- 1.~3. (현행과 같음) ②----------의료급여------. ③----------의료급여----------
제7조의2 (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상환하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 1. 의료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수 없을때 2. 대불금 채권의 시효가 소멸될 때 3. 기타 징수가망이 전혀없다고 판단될 때 4. 의료보호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 채권의 법정승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이경우는 도지사의 승인을 보고로서 갈음한다) 5. 상환의무자가 사망하였을 때 6. 보호종별이 1종으로 변경되었을때	**제7조의2 (결손처분)**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삭 제>